

「밀폐형 수집운반차량 제도 도입」 관련 산업계 공동성명서

2014. 8. 12.

중 소 기 업 중 앙 회

한 국 제 지 연 합 회 한 국 철 강 협 회
한 국 바 이 닐 환 경 협 회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
한국농수산업순환자원협회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한국합성수지재활용업협동조합 한 국 의 료 폐 기 물 공 제 조 합
한국합성수지자원순환협회 대 한 타 이 어 공 업 협 회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산업계는 그 동안 폐기물 배출·운반·처리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최소화 및 최적화 된 폐기물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밀폐형 차량 제도 도입 재검토 요청

그러나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대기질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7월 3일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현행 폐기물 수집·운반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 폐기물 유통(배출·운반·처리)과정과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한 동 사안에 대해 산업계는 제도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업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

현행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환경적 유해성이 있는 일부 폐기물에 한해서만 밀폐차량을 이용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해 유출·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한 통제·관리가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법적제재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미지 제고, 환경오염, 민원방지 차원에서 대부분 운반차량에 상부덮개 등의 밀폐작업을 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대기오염 영향 근거자료 미비

정부에서 제기한 대기오염 문제는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황사·미세먼지·산업시설·공사현장·자동차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폐

기물 수집·운반차량이 대기질 악화의 근본 원인인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로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계 분석자료를 근거로 기여도가 높은 업종별로 순차적·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국정과제 추진사항이라도 국민과 기업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폐기물 처리시스템에 최적화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현행 폐기물 수집·운반 적재차량은 발생하는 폐기물의 크기나 성상에 관계없이 적재가 용이하여 일반 산업폐기물 및 국가 재난사태 발생시 다양한 폐기물의 신속한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지만, 밀폐형 차량은 한정된 적재함 입구로 인해 별도의 전처리 장치 및 부대설비가 필요하고, 재난사태 발생시 신속·안정적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구조개선에 국한된 차량 교체비용

정부에서 제시한 사업장 차량 교체비용 3,510억원은 차량 구조개선에 국한된 비용으로 차량개선 외 밀폐형 차량 도입시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될 폐기물 상·하차를 위한 보관장 구조변경, 폐기물 상·하차 장비 등 부대설비 교체 비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산업계 전반에 경제적 부담 야기

특히 제조업계는 별도의 폐기물 보관장 신설 및 구조변경이 필요하고, 수집·운반업계는 적재용량·작업반경의 한계로 운반횟수가 증가하여 운반비용 및 대기오염이 증가할 것이며, 처리업계는 폐기물 보관장 구조변경 및 집게차·크레인·포크레인 등 부대설비 교체와 후방적재 폐기물 하차·이동을 위한 처리

공정이 추가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 다른 산업계 전반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일부 폐기물에 국한된 해외 밀폐차량 규정 국내 도입

외국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시 밀폐형 차량 이용은 일부 공정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부분 상부개폐형 차량을 이용하는 국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외국의 일부 사례를 근거로 국내 폐기물 수집·운반 공정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국내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입니다.

이처럼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제도 도입은 국내 폐기물 유통 과정과 맞지 아니하고 차량교체 이외 부대설비 전면교체와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임에 따라 우리 산업계에서는 동 제도 도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다음 3가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닌 현행 법률을 이용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업계 전체의견이 반영된 현실적 수용 가능방안(상부개폐형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정책 마련시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